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422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'22. 7월)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글로벌도시 촉진사업 기여자에 대한 포상(안 제4조의3)

나.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시 글로벌도시위원회 심의규정 삭제(안 제7조)

다. 글로벌도시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1조 ~ 제14조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(※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3(표창)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·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제2항 중 "감안하여"를 "고려하여"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5호 중 "감안한"을 "고려한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"를 "대구광역시의회"로 한다.

제4장(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3(표창) ① 시장은 글로벌도
	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
	내·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
	포상할 수 있다.
	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
	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
	례」를 따른다.
제5조(자매 도시 등) ① (생 략)	제5조(자매 도시 등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	②
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	
력 수요 등을 <u>감안하여</u> 적정한 범	- <u>고려하여</u>
위에서 정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결연 제의) ①・② (생 략)	제6조(결연 제의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	③
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	
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	5
적 특수여건 등을 <u>감안한</u> 교류	고려한
의 필요성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결연 등의 동의) 시장은 외국	제7조(결연 등의 동의)
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	<u>प</u>
	I

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(이 하 "의회" 라 한다)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.

제4장 글로벌도시위원회 제11조(글로벌도시위원회의 설치) <삭 제> 시장은 글로벌도시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1.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
- 2.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과제 의 발굴
- 3.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홍보 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- 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<삭 제>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,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위원은 다음 각

<u> 구광역시의회</u> -	
	•

<삭 제>

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- 1. 대구광역시의회의원
- 2.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 담당국장
- 3.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장
- 4. 교수·상공인 및 도시 글로벌 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
- 5. 국제기구 소속직원 및 국제협 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
- 7.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
-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3조(표창)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 ·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 상 할 수 있다.
 -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「대 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 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글로벌도시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국제통상과장 이 기 석